

# 審 查 報 告 書

1998年 12月 日  
豫算決算特別委員會

## 1. 回附豫算

가.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

## 2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

- 당초 : 1998년 11월 21일 평창군수
- 수정 : 1998년 12월 14일 평창군수

나. 회 부 일 자

- 당초 : 1998년 11월 25일
- 수정 : 1998년 12월 14일

다. 상 정 일 자

- 당초 :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(1998. 12. 8 상정)
- 수정 : 제7차 " (1998. 12. 15 상정)
-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(1998. 12. 18 의결)

### 3. 提案設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신대송)

#### 가. 제안이유

-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군 의회의 심의, 확정을 받으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은

-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,15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.8%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,762백만원, 특별회계가 7,395만원임

##### - 세입예산중

- 일반회계가 지방세 9,628백만원, 세외수입 12,080백만원, 지방교부세 28,756백만원, 지방양여금 7,634백만원, 국도비보조금 17,663백만원이며
-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,066백만원, 국도비보조금 1,329백만원, 지방채 1,000백만원임.

##### - 세출예산은

- 일반회계에 경상예산 26,104백만원, 사업예산 45,920백만원 채무상환 733백만원, 예비비등 3,005백만원이며, 특별회계가 경상예산 365백만원, 사업예산 5,041백만원, 채무상환 1,932백만원, 예비비등 57백만원임.

## 4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전문위원 허해성)

가.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31억 5,7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9억 9,194만원대비 16.8%인 168억 3,413만원이 감소되었으며,

-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75억 7,051만원이 감소한 757억 6,207만원이
-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억 3,638만원이 증가한 73억 9,574만원이 편성되었음.

### 나. 일반회계

#### ○ 세입부분

- 일반회계 세입은 '98년대비 18.8%가 감소한 757억 6,207만원으로 이는 세원별로 살펴보면
- 지방세 총규모는 96억 2,76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.9%인 3억 9,105만원이 감소되었으며
- 세외수입은 120억 8,086만원으로 전년대비 16.8%인 24억 4,625만원이 감소하였음.
- 지방교부세는 총 287억 5,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%가 감소된 금액임
- 지방양여금은 총 76억 3,443만원으로 전년대비 1.6%가 감소하였음.

-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총 124억 2,07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7억 2,473만원이 감소되었고,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대비 24.3%가 감소한 52억 4,228만원이 편성되었음.

## ○ 세 출 부 분

- 일반행정비는 의회운영과 기획관리, 선거관리 등에 182억 2,125만원이 계상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4%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9.8%가 감소한 금액임
-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,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, 사회보장, 주택사업등에 226억 7,68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29.9%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.8%가 증가된 예산임.
-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, 지역경제개발, 국토자원보존개발, 교통관리등에 329억 8,602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43.5%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대비 31.3%인 150억 8,043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.
- 민방위비에는 3억 3,784만원으로 전년대비 74.7%가 증가 하였으며 이는 국비보조사업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, 경보시설 설치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.
-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대비 57.6%가 감소한 15억 4,013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 7억 3,315만원, 제지출금 3,000만원, 예비비 7억 7,697만원으로 나타났으며, 이중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.03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
## 5. 質疑 및 答辨要旨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1.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억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?	○ 각종 미등록이나 기간내 .미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임.
2.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회의개최 보상비와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비에 대하여?	○ 99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무원만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고 예산을 수립하였음
3.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출연금 2억원에 대하여?	○ 고등교육법에 보면 교육제정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강원대학교 총장과 강원도지사가 '97년도에 협약한 사항이며 18개 시군중 평창군만 출연하지 않았음.
4. 군이미지 통합사업과 해피700상표 등록 추가출원 용역은 기대효과는?	○ 현행 지방자치 시대는 경쟁사회로서 시군마다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이에 맞추어 글자모양이든가, 시각디자인 등을 통합하여 문화행사라던가 체육행사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됨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p>5.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, 부족한 예산이 없는지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인력보강을 할 계획은 없는지?</p>	<p>○ 부족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족 인력에 대하여는 차후 대책방안을 검토할 계획임.</p>
<p>6. 능어촌손실 보상금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근거는?</p>	<p>○ 매년 3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하며 버스회사에서는 4억 3,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군의 재정여건 고려와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50%에 미달되게 지급하고 있음.</p>
<p>7. 일속직 수당에 있어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?</p>	<p>○ 전극적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인상에는 어려움이 있음</p>
<p>8. 한마음연수참석 예산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?</p>	<p>○ 지난 10월 본청 및 읍면 전직원이 참석했던 정신교육으로 호응이 좋아 1박 2일로 계획하였음</p>
<p>9. 가정방문 노인급식비에 대하여?</p>	<p>○ 98년부터 일일노인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거동불능자나,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차량으로 모시고 와서 진찰하고 있는데 진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중식을 지급했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임.</p>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p>10. 체육회 사무국장의 현재 업무는 무엇 인지와 인력감축등을 위하여 일용직도 채용 안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한 의향은?</p>	<p>○ 체육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도민 체육대회 등위부상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보며, 채용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예정임</p>
<p>12. '98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4,000만원은 정산이 되는지?</p>	<p>○ 정산이 되었음</p>
<p>13.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개최지는 어디 인지와 장평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장평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?</p>	<p>○ 평창읍 종합운동장, 장평우시장, 진부고수부지, 감자축계부지 중 적의지를 택하여 개최할 계획임.</p>
<p>14. 1998년도 치어방류는 어디에 실시 하였는지와 차후 사업계획을 확대 할 의향은 없는지</p>	<p>○ 방림면 천계당, 진부면 배덕거리, 봉평면 흥정천, 용평면 청개동천, 도암면 차항천에 방류하였으며, 도비보조 지원시 확대할 계획임.</p>
<p>15. 경제림 사업장 선정기준과 수간주사가 읍면마다 형평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</p>	<p>○ 솔잎혹파리나 산화피해목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식재하고 있으며, 정부예산지원등에 어려움이 있음.</p>
<p>16. 국토이용계획 도면 지번부여에 대하여</p>	<p>○ 학술용역비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군만 도면에서 제작된 부분만 가지고 발급하고 있고 준농림, 농림</p>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p>17. 하수관거 시설설치 내역은?</p>	<p>에 대한 착오발급으로 민원의 재산 피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작업임.</p> <p>○ 신규사업과 기존시설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임.</p>



## 6. 討 論 要 旨

- 가. 일부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원칙이나 근거없이 답습위주, 추측위주의 예산편성은 많은 예산이 투자될 때 투자되지 못하는 주 원인이 되는 바, 예산편성시 정확한 원칙과 근거에 의해 편성
  
- 나.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많은 신규사업 예산이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은 수정예산의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초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.
  
- 다. 정해진 시간내에 신속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보충자료 제출이 충분하여야 함에도 예년에 절반가량도 안되는 제출과 일부부서의 미제출 사례는 예산심의를 위한 집행부 협조가 부족했다고 봄.

## 7. 修 正 案 要 旨

### 가. 수정이유

-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가재정악화로 인한 전례없는 국도비감소와 세입격감등의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하거나, 불명확사업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삭감 조정.

## 나. 수정주요골자

- 세입중 세외수입의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  
취득세 8억 7,593만 4천원, 정기예탁금이자 3억원,  
도비보조금의 하수종말처리장 3억 5,700만원을 감액  
의결하고
- 세출중 일반행정비 1억 8,200만원, 사회개발비 5억7,900만원,  
경제개발비에서는 대도시 직판장유통시설확장 1억원등  
9개사업에 7억 7,193만 4천원을 삭감하였음.

## 8. 審 査 結 果

- 일반회계 :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 의결
- 특별회계 : 원안의결

## 9. 少 數 意 見 的 要 旨

- 가. 꼭 필요한 시책이라면 사전에 조례등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 
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예산편성
- 나. 송정택지는 지방채 30억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현재  
4억 5,600만원의 원금과 이자가 '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 
대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은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건  
집행부의 추진의지 부족이며, 잔여물량도 주차난등으로  
인하여 매각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 
이 없음.

- 다. 주민 직접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한 식비 등의 지원이 미흡한 면이 있음.
- 라. 대부분 국고보조로 추진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와 수간주사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는등 산림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망됨.
- 마. 봉평 무이·면온등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고도 몇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시되지 않아 무절제한 개발을 허용토록 방치하는 것은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부족했다고 봄.
- 바.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재검토가 요망됨.
- 사. 예산을 투자한 산초나무 재배사업이 관리가 되지않아 사업효과가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재투자를 위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건 사업에 대한 철저한 효과분석이 있어야 할 것임.
- 아.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감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체육회 민간인 사무국장을 채용을 위한 인건비 편성은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재검토가 요망됨.
- 자.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 검토

차.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정액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 성과분석을 통하여 실적율에 따라 보조하는 방안 검토

## 10. 基他 必要한 事項

— 없 음 —

첨부 :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수정안 1부.

#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안

## 1. 예산총칙 수정

### ○ 제1조

(단위:천원)

회 계 명	지방자치단체제출 예산액	수정예산액	증 감
계	83,157,816	83,157,816	-
일반회계	75,762,072	75,762,072	-
특별회계	7,395,744	7,395,711	

### ○ 제2조 ~ 7조 : 변동사항 없음

## 2. 예산수정의결 내역

### 가. 세입총괄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	수 정		수정예산액	비 고
		감 액	증 액		
계	83,157,816	-	-	83,157,816	
일반회계	75,762,072	-	-	75,762,072	
특별회계	7,395,744	-	-	7,395,744	

## 나. 세출총괄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	수 정		수정예산액	비 고
		감 액	증 액		
계	83,157,816	697,380	697,380	83,157,816	
일반회계	75,762,072	697,380	697,380	75,762,072	
특별회계	7,395,744			7,395,744	

### ○ 일반회계 세출

과 목			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	수 정		수정예산액	수정사유 및 내역
관	항	세항		감 액	증 액		
계			83,157,816	697,380	697,380	83,157,816	
1000 일반행정비			18,221,258	289,536	1,200	17,932,922	
1200 일반행정비			17,694,876	289,536	1,200	17,406,540	
	1210 기획관리		10,707,251	270,000		10,437,251	
		1211 기획관리	365,150	270,000		95,150	○21C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 △30,000  ○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 출연금 △240,000
	1220 공보관리		353,643	19,536		334,107	
		1221 공보관리	353,643	19,536		334,107	○주민계도용 신문구독 △19,536
	1240 내무행정		4,931,059		1,200	4,932,259	
		1245 일선행정 조직운영	552,755		1,200	553,955	○면개발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1,200

과 목			지방자치단체	수 정		수정예산액	수정사유 및 내역
관	항	세항	제출 예산액	감 액	증 액		
2000 사회개발비			22,676,805	130,009		22,546,796	
2100 교육 및 문화비			5,458,347	130,009		5,328,338	
	2110	문화예술	4,226,356	10,000		4,216,356	
		2111 문화진흥	3,696,527	10,000		3,686,527	○팔석정안내표지판설치 △10,000
	2120	체육청소년	1,231,991	120,009		1,111,982	
		2121 체육진흥	1,182,681	120,009		1,062,672	○직장체육부(레슬링)운영 △ 77,313 ○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△ 17,696 ○도민체육대회 출전 △ 15,000 ○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△ 10,000
3000 경제개발비			32,986,024	277,835		32,848,024	
3100 농수산개발비			14,249,056	142,500		14,111,056	
	3110	농정관리	12,781,562	47,500		12,738,562	
		3114 유통특작	691,340	47,500		648,340	○대도시직관장시설장비 지원(경육포장기) △ 7,000 ○수출용화훼운송료지원 △16,000 ○평창강냉이가공기계설치 △20,000 ○평창강냉이 생산과정 특허 및 상품권출원 △ 4,500
	3120	축수산진흥	487,391	95,000		392,391	
		3121 축산행정	487,391	95,000		392,391	○HAPPY 700 평창한우 홍보입간판 △ 30,000 ○원에·축산능가고리멧기 지원 △21,000 ○가축질병차단시설 △24,000 ○축산물 대도시판매점 연결고리 멧기△20,000

과 목			지방자치단체 재출 예산액	수 정		수정예산액	수정사유 및 내역
관	항	세항		감 액	증 액		
3200 지역경제개발비			1,049,306	110,000		939,306	
	3230 관광관리		524,948	110,000		414,948	
		3231 관광관리	486,315	110,000		376,315	○관광안내 및 군정홍보 ARS설치 △20,000 ○관광홍보영상물제작 △ 90,000
3300 국토자원보존개발			17,305,116	25,335	696,180	17,279,781	
	3310 산림자원개발		6,157,392	25,335		6,132,057	
		2121 산림보호	2,067,224	25,335		2,041,889	○산불유급감시원인건비 △25,335
	3330 건설관리		9,163,668		696,180	9,859,848	
		3333 농어촌도로 확포장	2,470,176		696,180	3,166,356	○농촌마을도로포장사업 696,180



#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

의안 번호	4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8. 12. 14.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경통보에 따른 조정과 재원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작성 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가.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3,15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.6%인 4,40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,193백만원이 증가하였고, 특별회계는 213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### 나. 세입예산은

일반회계가 세외수입 1,718백만원, 지방양여금 214백만원, 국도비보조금이 2,26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98백만원, 도비보조금 15백만원이 증가하였음

#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가 경상예산 156백만원, 사업예산 6,379백만원이 증가하였고, 채무상환 718백만원, 예비비등 1,62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,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13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18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